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3년 1월 현재)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사본

④ 신분증 (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며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 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계약내용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본인부담금액 등으로 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3.01.01.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2년 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23년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인상율	12.69%	13.67%	4.92%	4.92%	4.92%	4.52%

2)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요율 (2023.01.01. 기준)

<방문요양>

방문당 시간	'23년 수가	15% (일반)	9% (40%경감)	6% (60%경감)
30분	16,190	2,42	1,457	971
60분	23,480	3,522	2,113	1,409
90분	31,650	4,748	2,849	1,899
120분	40,280	6,042	3,625	2,417
150분	46,970	7,046	4,227	2,818
180분	52,880	7,932	4,759	3,173
210분	58,930	8,840	5,304	3,536
240분	65,000	9,750	5,850	3,900

<방문목욕>

구 분	'23년 수가	15%(일반)	9% (40%경감)	6% (60%경감)
차량이용(차량 내)	82,160	12,324	7,394	4,930
차량이용(가정 내)	74,070	11,111	6,666	4,444
차량 미 이용	46,250	6,938	4,163	2,775

5. 기타비용부담

- 1)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2)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 ① 비용 변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 ②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7.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급여제공자의 의무

- ① 수급자의 안전한 가정내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③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④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3) 수급자의 권리

-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③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 ④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⑤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8. 계약의 해제

1)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의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로 통보 하도록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수급자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허위로 신청했을 때
 - ② 타 기관과 이중 등록 했을 때
 - ③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⑤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⑦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해제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⑧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2)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며,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제하고,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